

사회적 배제의 국가간 비교연구

— 프랑스, 영국, 스웨덴을 중심으로 —

문진영

(서강대학교)

[요약]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럽 각국에서는 기존의 빈곤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여 빈곤과 불평등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 실버(H. Silver, 1994)는 사회적 배제의 세 가지 패러다임(공화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사민주의)을 제시하면서, 한 사회가 기반하고 있는 철학에 따라서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인식과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을 논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인식과 전략에서 각각 세 가지 패러다임을 대표하고 있는 프랑스, 영국, 스웨덴의 경우 실제 사회적 배제 상황에서도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이론적) 개념화 → (국가별) 유형화 → (측정) 지표화"의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연구대상 국가별로 사회적 배제의 상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이를 기초로 정직한 유의차(Honestly Significant Difference: HSD) 기법을 사용하여 사회적 배제 지표별로 연구대상 국가간에 어떠한 차이점이 가능한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념적 기반에 따라서 다른 사회적 배제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실버(1994)의 세 가지 패러다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여 그의 주장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지는 한편으로, 실제적으로 한 사회가 기반하고 있는 철학적인 배경의 차이가 구체적인 사회적 현상(여기서는 사회적 배제)의 차이를 가져오는 지 여부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빈곤, 사회적 배제, 실버(Silver)의 세 가지 패러다임

1. 서론: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주지하다시피, 빈곤의 문제는 인류의 문명세계 건설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자, 반드시 극복해야 할 사회적 악으로 존재해 왔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근대화를 이룩한 서구의 경우에도, 빈곤의 극복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전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목적으로 복지국가를 건설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복지국가의 역사는 바로 빈곤에 대한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빈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떠한 정책적 지향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빈곤을 극복할 것인가는 복지국가의 성격을 규정하고 미래의 발전을 조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후 복지국가의 건설기인 1950년대부터 약 50여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한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을 포함한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빈곤의 문제가 만성화, 세습화되면서,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Abrahamson, 2003: 281). 예를 들어서, 현재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사회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평가받는 유럽의 경우에도, 2001년 현재 전체 유럽인의 15%에 해당하는 5천5백만 명이 빈곤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빈곤 인구의 절반 이상은 지속적인 빈곤(persistent poverty)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 실업자, 아동, 노인, 한부모 가구 등 전통적인 취약계층의 빈곤율은 유럽 평균을 훨씬 상회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EC Commission, 2003: 4).

이렇듯 “풍요로운 경제하에서의 빈곤의 만성화와 세습화”의 문제가 대두되자, 유럽에서는 기존의 빈곤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여 빈곤과 불평등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의미의 빈곤이 주로 ‘물질적으로 결핍된 상황’이라는 정태적인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사회적 배제는 단순히 물질적 결핍이라는 현상을 넘어서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과 과정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즉 사회적 배제는 기존의 빈곤에 대한 개념에 비하여 ① 빈곤의 역동성(dynamic)에 초점을 맞추며, ② 빈곤을 금전적인 문제에서 다차원적인 불리함(multidimensional disadvantage)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고, ③ 개인보다는 가족과 지역사회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④ 참여, 권한, 그리고 사회통합 등과 같은 관계적인(relational)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Room, 1995: 233-242), 이를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위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배제는 ‘자원의 결핍(빈곤)’을 포함한 다차원적 차원에서 동태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소득이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기존 복지국가의 방식이 빈곤문제 해결에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했던 이유의 일단을 알 수 있다. 즉 복지국가의 건설 당시에는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이라는 잣대를 일률적으로 설정하고, 한 개인(가구)의 소득이 이에 미달할 경우 국가의 예산으로 채워주면 빈곤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졌으며, 특히 전후 복지국가의 총 설계자라고 할 수 있는 베버리지(W. Beveridge)는 국가(사회)보험제도가 발전하면서 국민(공공)부조제도는 소멸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제도 발전은 이들 초기 복지국가 건설자들의 생각이 너무 단순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즉 복지국가체제하에서 소득이전 프로그램으로 기본 생계를 유지시킨다 하더라도, 그 개인이나 가구가 빈곤에 빠지게 된 원인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국가의 의존(welfare dependency)에 빠지게 되어 빈곤의 문제가 만성화·세습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표 1> 사회적 배제의 구조

	정태적 결과 (Static outcome)	동태적 과정 (Dynamic process)
소득(Income)	빈곤(Poverty)	궁핍화(Impoverishment)
다차원적 (Multidimensional)	박탈(Deprivation)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자료: Berghman(1995), Table 2.1.

이러한 빈곤의 인식 변화 및 기존 복지국가 체제에 대한 반성은 현실세계에서의 정책적 변화를 수반하여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1980년대 중반 프랑스의 사회당 정부가 사회적 배제를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실직(long-term and recurrent unemployment)’ 뿐만 아니라 가족의 위기, 1인 단독가구의 증가, 사회적 고립화, 그리고 계급연대의 퇴조에 따른 전반적인 사회적 유대(social bond)의 불안정성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한 이후에, 프랑스 정부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응양식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을 넘어서서 ‘사회적 결속(social cohesion)의 증진’이라는 새로운 사회정의에 입각한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하고 있다(Silver, 1994: 533). 한편 전형적인 자유주의 국가인 영국의 경우에도 1990년대부터 사회적 배제에 관한 일반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여 1997년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사회적 배제 극복기획단(Social Exclusion Unit: 이하 SEU)’을 부총리실(The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의 직속기구로 조직하여, 사회적 배제라는 현상을 연구하고 이를 기초로 다양한 사회적 배제극복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경제·정치·사회적 차원에서 완전 유럽통합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가 회원국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에서는 유럽 사회 헌장(The European Social Charter, 1989)의 서문에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이후에, 유럽 지역 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암스테르담 조약(The Amsterdam Treaty, 1997)에서는 유럽연합이 추구해야 할 목표중의 하나로서 사회적 배제 극복을 명시하였으며(제136조),¹⁾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제137조). 이어 2000년 3월에 개최된 리스본 유럽 정상회담(The Lisbon European Summit)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극

1) 앳킨슨(T. Atkinson, 1998: 9)에 따르면, 유럽연합에서 사회적 배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하게 된 배경에는, 빈곤이라는 의제가 유럽이사회에서 다루어지는데 거부감을 표명하였던 당시 영국 보수당 정부를 무마하기 위한 유럽연합 행정기구(the Brussel Government)의 교육정책이었다고 한다.

복을 유럽 사회 모델(European Social Model)의 중심요소로 규정하고, 2010년까지 유럽에서 빈곤을 박멸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동년 12월에 개최된 니스 유럽 이사회(The Nice European Council)에서는 각 회원국을 대상으로 ‘빈곤 및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이하 NAP/inclusion)’을 마련하고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Begg and Berghman, 2002: 179-180).

따라서 사회적 배제 개념은 빈곤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문제를 나타내는 새로운 개념으로서 유럽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포괄적인 접근법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사회적 배제 극복 전략이 기존의 ‘빈곤 대책’을 대체 하면서, 물질적 결핍 상태에 있는 개인 또는 가구를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소득이전정책(income transfer policy)을 통해서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복지국가의 정책지향에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현재 한 사회가 사회적 배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적 배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이에 관해서 실버(H. Silver, 1994)는 사회적 배제의 세 가지 패러다임(공화주의적, 자유주의적, 그리고 시민주의적)을 제시하면서, 한 사회가 기반하고 있는 철학에 따라서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안이 달라진다는 점을 논구(論究)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인식과 전략에서 각각 세 가지 패러다임을 대표하고 있는 프랑스, 영국, 스웨덴의 경우 실제 사회적 배제 상황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²⁾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 예를 들자면 “사민주의 국가는 자유주의 국가보다 사회적 배제가 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인식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를 분석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기초로 정직한 유의차(Honestly Significant Difference: 이하 HSD) 기법을 사용하여 사회적 배제 지표별로 연구대상 국가간에 어떠한 짝짓기가 가능한가를 살펴봄으로써, 이념적 기반에 따라서 다른 사회적 배제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버(1994)의 세 가지 패러다임을 실증적으로 보완하는 의미를 가지는 한편으로, 실제적으로 한 사회가 기반하고 있는 철학적인 배경의 차이가 구체적인 사회적 현상(여기서는 사회적 배제)의 차이를 가져오는지 여부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이론적) 개념화 → (국가별) 유형화 → (측정) 지표화”의 세 가지 수순을 각각 하나의 장(chapter)으로 독립시켜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 2 장에서는 기존의 이론적 연구의 토대 위에서 “사회적 배제란 무엇이고, 기존의 빈곤이나 불평등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라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본 연구에 적합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한다. 이어 제 3 장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연대 패러다임(프랑스), 분화 패러다임(영글로 색슨 국가), 독점 패러다임(스웨덴)으로 구분한 실버(Silver, 1994)의 유형화를 중심으로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에 대한 극복 전략이 국가별로 어떠한 차이(특성)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 4 장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

2) 따라서 이 연구는 사회적 배제 극복 정책(사회적 포섭 전략)에 관한 본격적인 국가간 비교연구를 위한 사전적(preliminary)인 연구로 의미를 한정하고자 한다.

는데, 주로 이론적인 논의를 넘어서서 다양한 학자들의 실증적 분석을 위한 지표화 작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제5장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논리적 연결구조(개념화 → 유형화 → 지표화)의 기반 위에서 실버(1994)가 제시한 사회적 배제의 세 가지 패러다임에 해당하는 프랑스, 영국, 그리고 스웨덴의 사회적 배제 지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그리고 유럽연합 15개국의 평균을 기준으로 어떻게 국가간 짝짓기가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논의를 정리하며 결론을 맺고자 한다.

2. 사회적 배제의 개념화

사회적 배제를 처음 학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는 막스 베버(Max Weber)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사회적 배제를 사회적 폐쇄(social closure)의 한 형태로 파악하여, 한 집단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와 특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다른 집단을 희생시키려는 시도로 이해하였다(Burchardt, Le Grand, Piachaud, 이하 BLP, 2002: 1-2).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배제 현상에 대한 그의 언급은 분석적 차원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사장되었다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당시 프랑스의 경제기획성의 책임자였던 피에르 마세(Pierre Massé)에 의해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였고³⁾ 이후 르노와르(René Lenoir, 1974)가 사회적 배제에 관한 인식의 지평확장을 한 이후 현실세계에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심창학, 2001: 189-191). 즉 르노와르가 사회적 배제의 핵심에 사회적 부적응(social misfit)이 있다고 정리한 이후에, 유럽에서는 “빈곤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현상”에 대한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배제’라는 단어의 저작권(authorship)은 르노와르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가 미친 영향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Sen, 2000: 1).

하지만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이 1990년대에 이르러, 기존의 ‘빈곤’과 ‘불평등’을 대체하며 사회정책의 대표용어로 자리잡게 된 계기는 무엇보다도 지난 20세기 후반기 새로운 사회적 균열(social cleavage)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새로운’ 사회적 균열이란 산업화 시대의 계급차이에 따른 빈부격차와는 다르게 진행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근로형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즉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근로의 속성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서 새로운 고용형태와 실업형태가 등장하는데, 이에 따라서 복지국가 급여체계가 제한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기준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났다(Littlewood and Herkommer, 1999: 1-2). 이에 대해서 바이른(D. Byrne, 1999)은 후기 산업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체제의 내적인 속성의 변화로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핵심으로, 불평등을 양산하는 후기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배제는 체제 유지를 위한 필연적인 속성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the socially excluded)은 하위계급(underclass)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산업예비군(reserve army)으로서, 불안정 저임금 고용형태를 반복하는 한편으로, 노동자계급의 힘을 견제함으로써 자본축

3) 1960년대 당시 그는 사회적 배제를 사회보험체도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 즉 국가의 행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적에 기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Byrne, 1999: 128; Kooten, 1999; BLP, 2002: 2).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기존의 ‘빈곤’ 혹은 ‘가처분 자원의 결여’를 넘어서서 기존의 체제(기관)로부터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문제가 중심적인 사회문제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20세기 후반기에 나타난 새로운 사회적 균열은 산업화 시대의 계급차이에 따른 빈부격차와는 사뭇 다른 형태로 진행되어, 이제는 사회적 갈등이 빈부(poor/rich)에서 배제와 포섭(exclusion/inclusion)으로 대체되고 있다(Vobruba, 2000). 이렇듯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어느 사회에서든 ‘사회적 배제’가 주요한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지만, 그 개념 자체가 아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실상 사회적 배제는 다양한 연구자에 의해서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배제에 대한 연구는 바로 다양성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유럽 연합의 집행위원회(EC Commission)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배제의 다양한 측면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어떤 나라에서 사회적 배제는 주로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사회적 처우를 강조할 때 사용되는 한편 (벨기에와 독일), 다른 나라에서는 장기실직자와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를 의미하기도 하며(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또 다른 국가에서는 저소득층의 문제이기도 하다(포르투갈). 사회적 배제에 대한 논의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우와 같이 기초생활의 보장과 같은 특정한 정책과 연결되기도 하고, 영국의 경우와 같이 복지국가의 기능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정책적 고려와 연결되기도 한다. ..., 또한 나라마다 노숙자(프랑스와 영국), 마약(이태리), 아동노동(포르투갈), 그리고 대도시 도심의 위기(inner-city crisis: 프랑스)와 같이 일반시민들의 주목을 받는 구체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단체나 언론에 의한 캠페인의 형태로 가열되기도 한다(EC Commission, 1992: 32).”

이와 같이 사회적 배제라는 현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의성과 다기성(多岐性) 때문에 이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무엇이 사회적 배제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다차원적인 의미를 지닌 모호한 개념인데다가, ‘배제’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은 무수히 많을 뿐만 아니라 각 요인들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제를 강화시키고 있다(Silver, 1994: 536). 더욱이 사회적 배제를 일으키는 요인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민국가 그리고 세계(global) 등 각각의 층위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규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의 유일한 합의점은 바로 사회적 배제를 단일한 기준에 입각하여 개념규정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Weinberg and Ruano-Borbala, 1993, translation by Silver, 1995: 59).

하지만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을 규정하는 것은 이론적 차원뿐만 아니라 정책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즉 우리가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려는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 대상인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사람(the socially excluded)들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이 규정되어야 한다. 만약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이 연구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무정형의 개념이라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사용하고자 한다. 즉 ‘해체와 재구성’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개념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어느 시기와 지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배제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로서 다차원성(multi-dimensional), 상대성(relativity), 기관(agency), 그리고 역동성(dynamics)을 설정하고자 한다.⁴⁾

먼저 사회적 배제는 단순히 개인이나 가구의 ‘가처분 소득의 결여’ 혹은 ‘실업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고, 이를 포함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다차원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차원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박탈(deprivation)과 사회적 배제를 어느 정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박탈의 개념에서 중심적인 요소는,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어떠한 물건을 소유하고자 할 때, 이를 실현시킬 기회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박탈이란 특정한 지역사회(community)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행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뿐만 아니라, 특정한 상품이나 시설(facilities)을 구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의 결여라고 정의할 수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2: 22). 그런데 위의 제1장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박탈이란, 그것이 소비행위이건 혹은 참여행위이건, 어떠한 행위에 대한 능력의 결여라는 정태적인 결과를 의미한다면, 사회적 배제란 한 사회의 주류 질서 혹은 도덕적 토대로부터 점차 유리되는 일련의 동태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Castles, 1990; Room, 1995: 6에서 재인용).

둘째, 사회적 배제가 상대적인 이유는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장소라는 특정한 상황적 맥락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는 빈곤과는 달리 절대적인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Richardson and Le Grand, 2002: 498).⁵⁾ 즉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배제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이고 고립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행위가 영향을 미쳐서 사회적 배제가 구체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이다. 즉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적 배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배제를 사회의 주류적 질서나 도덕적 토대로부터 유리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면, 이 과정에는 반드시 이러한 행위를 담당하는 기관(agent)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배제된다는 것은 어떠한 개인들(individuals)로부터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group)이나 지역사회(community)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곧 사회적 배제를 창출하는 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배제 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역동성(dynamics)이라고 할 수 있다.

4) 이를 위하여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Room(1995); Silver(1995); Walker(1995); Barry(1998); BLP(1999; 2002); Atkinson and Hills(1999); Vlemminckx and Berghman(2001); Whelan, Layte, Maitre and Nolan(2002); Richardson and Le Grand(2002).

5) 사실 빈곤도 사회적 배제와 마찬가지로 개념정의나 특히 그 측정방식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Abrahamson, 2003: 281).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컫는 절대적인 개념의 빈곤도 상대성(혹은 사회적 합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전물량방식(market basket)으로 빈곤선을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성하는 물품 하나 하나에 대해, 최저생계 유지를 위한 필수품 여부, 초기 구입가, 그리고 내구연한 등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사회적 배제가 빈곤에 비해서 더 상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다는 것은 단지 그가 현재 실업상태이거나 혹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현재의 실업상태나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전망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의 부재는 바로 사회적 배제의 세대간 전승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는 결국 빈곤의 장기화에 그 원인이 있다. 빈곤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개인이나 가구는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점차 잃어가고, 그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와 단절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결속감을 상실하고, 따라서 이들로부터 정치적인 지지를 받기 힘들어진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빈곤의 경험은 사회적 배제로 이행하게 된다(Walker, 1995: 103).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적 배제를 구성하는 공통요소에 대한 설명을 기초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재구성해보자면, 사회적 배제란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정서적 차원에서 사회의 주류 질서로부터 유리되는 역동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규정은 실제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경우, 예를 들어서 자발적인 배제(voluntary self-exclusion)가 일어날 경우 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르 그랑(J. Le Grand)은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교(LSE)의 사회적 배제 분석센터(Centre for Analysis of Social Exclusion)의 연구그룹에서 사회적 배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가 있다(Le Grand, mimeo; BLP, 1999: 229에서 재인용)

- ① 지리적으로 특정 사회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 ② 그 자신의 통제를 넘어서는 이유로 인해서, 그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는 사람으로서,
- ③ 그 사람이 참여하기를 희망할 경우,
→ 위의 ①, ②, ③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은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다.

즉 위의 정의에 따르면, 어떤 특정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조건 a), 그 사람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면(혹은 여건상 참여할 수 없다면) 조건 (b)와 (c)를 충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자발적으로 사회로부터 이탈하여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어떤 집단이 기존의 질서에 반하여 지속적인 적대감에 처해 있다면(예를 들자면 빈곤 문화 등), 그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그 자신이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 자체 때문에 자발적으로 반사회적인 행위를 할 경우, 이는 사회적 배제의 한 형태로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빈민층들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사는 어떤 청소년의 경우, 그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자발적으로 지역 폭력단에 가입했을 경우에도, 그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BLP, 1999: 229-230). 즉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실제적인 행위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동이 나오게 된 상황적 맥락(기존 질서에 대한 적개심과 차별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행위는 여전히 사회적 배제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 자기배제

(self-exclusion)의 경우라도, 여전히 그것을 사회적 배제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Barry, 1998: 2).⁶⁾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에 기초하여 사회적 배제를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한 개인이 지리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한 사회에서 시민으로서(상대성) 누려야 할 경제적, 문화적, 정서적인 활동(다차원성)에 지속적(역동성)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 사회(기관)로부터 배제되었다.

3. 사회적 배제의 유형화과 국가별 특성

사회적 배제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1) 사회적 배제의 개념규정 및 이론화 작업, (2) 사회적 배제현상의 범주(the extent to these phenomenon), (3) 빈곤자 혹은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로 나뉜다(Piachaud, 2002: 1). 하지만 이와 같은 세 가지 연구영역은 상호배제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구성과를 아울러서 통합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유형화라고 할 수 있다.

<표 2> 사회적 배제의 세 가지 패러다임

구 분	연 대	분 화	독 점
통합의 개념	집단 연대/문화적 경계들	분화/분리된 영역들/상호의존	독점/사회적 고립
통합의 원천	도덕적 통합	교환	시민권
이데올로기	공화주의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담론	배제	차별, 하층계급	신 빈곤, 불평등, 하층계급
기본 사상가	루소, 뒤르켐	로크, 매디슨, 공리주의자들	마르크스, 베버, 마샬
대표적 이론가	푸코, 씨베라, 더글라스, 미드 등	다원주의, 시카고 학파, 머레이 등	툼, 타운센드, 발리바, 실버맨
신 정치경제 모델 ⁷⁾	유연화된 생산	기술 노동동기 약화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	노동시장 분절

자료: Silver(1994: 540), Table 1.

6) 배리(Barry, 1998)는 이러한 종류의 사회적 배제를 해고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직장을 퇴직하는 행위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의 주류 질서에 편입되지 못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자발적으로 고립되는 행위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사회적 조건으로부터의 배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형화의 대표적인 작업은 실버(Silver, 1994)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는 쿤(T. Kuhn, 1970)의 패러다임론에 기초하여 사회적 배제의 패러다임을 연대(solidarity), 분화(specialization), 독점(monopoly) 세 가지로 나누고, 이들 각 패러다임은 서로 다른 정치철학(즉 공화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실버의 표현에 의하면, 각 패러다임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 형태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며 빈곤 및 장기실업 뿐만 아니라 시민권과 인종적, 민족적 불평등 이론들까지 포함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쿤의 패러다임(The Kuhnian Paradigm)은 그 자체로서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는 신념의 축적으로서, 당면하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성원들 사이에 합의된 집합체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의 <표 2>에서 나타난 사회적 배제의 패러다임은 각각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립되고 자기완결적인 세계관에 기초하여(Kuhn, 1970),⁷⁾ 사회적 배제의 발생원인과 그 형태와 구성 그리고 그 대응양식에 대해서 뚜렷이 차별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프랑스를 대표로 하는 연대(solidarity) 패러다임을 먼저 살펴보자면, 공화주의적 전통 하에서 한 사회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의 법률적 관계로 이루어진 집합체 혹은 지위의 계층제(status hierarchy)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광범위한 도덕적 질서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사회적 배제란 이러한 도덕적 질서로부터 유리되는 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Castles, 1990; Room, 1995: 6에서 재인용), 따라서 역사적으로 공화주의적 전통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프랑스에서 사회적 배제란 결국 ‘개인’과 ‘사회’ 사이에 사회적 결속이 약화되어 사회적 연대가 붕괴될 때 발생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Silver, 1994: 541).

이러한 점에서 공화주의적 전통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프랑스에서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이 1960년대 세계 최초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70년대를 거치면서 사회적 배제는 사회적 부적응의 형태로 규정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사회적 배제가 공식적인 국가정책과 직결되는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심창학, 2001: 190-191). 또한 1990년대 들어서면서 프랑스는 기존의 사회보호체계의 개선에 의존하기보다는 사회적 배제 극복을 하나의 국가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법 및 제도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등 사회적 배제 극복정책의 구상 및

7) 20세기 말부터 고전 정치경제 모델의 기본 가정이 무너지면서 신정치경제 모델(model of the new political economy)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연대 패러다임의 유연화된 생산이란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와는 다른 것으로, 사회적 연대에 근거를 두면서 생산적인 분권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 접근법은 경쟁을 제약하는 측면에서는 자유주의에 기초한 분화 패러다임과 다르며, 집단 경계(group boundaries)를 축진하는 한편으로 어느 정도의 불평등을 수용하는 측면에서는 시민주의의 독점 패러다임과도 구분된다.

8) 물론 쿤의 패러다임론의 핵심은 자연과학에서 부단히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하나의 패러다임 등장 →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 → 정상과학으로 등극 → 예외(anomalies)의 등장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부터의 도전 →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역사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여전히 질서 없이 각축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세 가지 패러다임의 성격을 전적으로 쿤의 패러다임론에 기대어 설명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여기서는 각 사회적 배제 패러다임이 가지고 있는 자기완결적이고 공동체적 특성을 설명하는데 그치고자 한다.

실천에 있어서 가장 선진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는 분화(specification) 패러다임으로 자유주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미국과 영국 등 앵글로 색슨 국가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인식 및 정책적 지향을 가리킨다. 이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한 사회를 시장 안에서 경쟁하는 원자화된(atomized) 개인으로 이루어진 집합체이고(Room, 1995: 5-6), 이러한 사회의 질서는 자율성을 가진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교환의 네트워크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인식하에서 시민권(citizenship)도 권리와 의무의 사회계약적 교환관계로 발전하였고, 사회의 구성도 전문화를 통한 사회적 영역의 구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는 사회적 영역이 부적절하게 분리될 때, 특정한 영역에 불합리한 규칙이 적용될 때 혹은 사회적 영역 간에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방해물이 있을 때 발생한다고 이해하고 있다(Silver, 1994: 542-543). 따라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극복의 방향도 집단 간 차별의 철폐와 영역간 자유로운 진입과 이탈의 보장에 초점을 맞추어 설정된다(심창학, 2001: 185).

한편 1997년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앵글로 색슨 국가의 전통적인 빈곤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한 걸음 더 발전한 형태의 사회적 배제 패러다임을 가지고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배제 극복기획단(Social Exclusion Unit: SEU)'을 부총리실(The Office of Deputy Prime Minister) 직속으로 설치하여 전국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한계 집단에 대한 연구와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안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국은 자유주의 국가로서 '근로를 기반으로 한 포용정책(work-based inclusivity policy)'을 강조하며, 실업과 사회적 배제의 관련성을 사회적 포섭구조로 이해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을 통해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려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영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인식, 발생원인, 형태 그리고 대처 방안 역시 프랑스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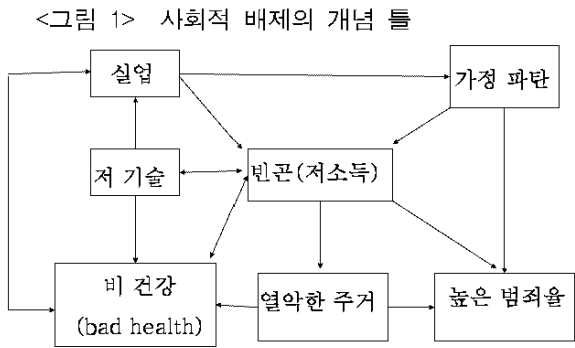
세 번째는 사회민주주의형 패러다임으로 실버는 이를 독점(monopoly) 패러다임으로 명명하였다. 이 패러다임은 전통적인 유럽 좌파의 철학적 기반 위에서, 사회적 질서를 서열적인 권력 관계를 통해서 부과된 강제적인 기제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는 계급, 지위, 그리고 정치권력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생하고, 이러한 배제화 작업은 권력 내부에 편입된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고 한다(Silver, 1994: 543). 따라서 이러한 독점 패러다임에서 사회적 배제는 사회의 불평등과 경제적 착취를 야기하는 집단 독점의 현상으로 파악한다(Silver, 1994: 561).

그러나 대표적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스웨덴의 경우, 사회적 배제 자체보다는 전반적인 사회보호 체계의 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스웨덴 사회보호체계는 서비스 및 급여 제공에 있어서 보편주의, 관대성, 공공기관의 강한 역할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는 완전 고용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정책, 중앙 집중적이고 합의제 성격의 단체 협상 모델, 임금의 연대성, 교육을 통한 적극적 정책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스웨덴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문제도 기존 사회보호 체계의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자국의 복지국가 체계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첫째, 스웨덴에서는 사회적 배제 용어 대신 사회적 한계화(social marginality)라는 용어를 더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둘째, 스웨덴의 정치계나 학계는 사회적 배제라는

특정 주제보다는 오히려 사회보호체계 자체의 개혁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심창학, 2003). 이러한 점에서 스웨덴에서는 사회적 배제 자체에 대한 공론화는 상당히 약한 편인데, 이렇듯 완강하게 기존의 복지국가체제를 유지하려는 스웨덴의 경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사회적 배제극복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다.

4. 사회적 배제의 측정 지표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사회적 배제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일정한 변화를 보이게 된다. 즉 1980년대 말까지는 학자들의 관심사가 주로 사회적 배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중심이었다면, 1990년대를 넘어서면서 사회적 배제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와 같은 실증적인 분석으로 이행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이론)을 실제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구체적 이슈 집중형으로 영국의 SEU가 시도하고 있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사회적 배제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보다는 구체적인 사회적 배제 현상(예를 들자면, 소수인종, 10대 임신,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분석과 이에 대한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두 번째 방식은 보다 포괄적인 접근으로, 사회적 배제를 사회의 주요한 행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폭넓게 해석하고 이를 측정하려는 방식이다(BLP, 2002: 4-5). 예를 들어서, 로빈슨과 오펜하임(Robinson and Oppenheim, 1998), BLP(1999), 그리고 브로드쇼 외(Bradshaw and others, 2000)의 연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의 차원에서는 최근 유럽연합 사회보호 위원회(Social Protection Committee, 2001)가 개발한 ‘빈곤 및 사회적 배제에 관한 공동 지표(Common Indicators of Poverty and Social Exclusion)’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로빈슨과 오펜하임(1998: 4-5)은 SEU(1997)에서 천명한 7개의 사회적 배제를 일으키는 문제영역을 이용하여 각각의 영역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아래의 <그림 1> 참조), 이를 기초로 사회적 배제 지표를 개발하였다(아래의 <표 3> 참조).



자료: Robinson and Oppenheim(1998), Fig. 1

<표 3> 로빈슨과 오펜하임의 사회적 배제 지표

영역	지표
소득	1. 빈곤(평균 소득의 50% 이하의 가구) 추이 2. 10분위(decile group) 소득점유 추이 3. 인종집단별 5분위 소득점유 추이 4. 소득지원(공공부조) 수혜 기간
실업	1. 장기실직률(2년 이상) 추이 2. 실업, 비고용(non-employment), 비근로(workless) 가구 추이 3. 비근로 가구(workless households)의 인적구성 및 비율
교육	1. GCSE 평점 추이 2. 성별, 인종별, GCSE 평점별 취득 비율 3. 16세의 주요 소속별, GCSE 평점별 취득 비율 4. 근로연령에 있는 사람의 최고 교육자격 취득률 추이
건강	1. 사망률 2. 신생아 평균체중과 저체중 신생아 비율

자료: Robnson and Oppenheim(1998).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BLP(1999)는 사회적 배제를 소비행위(consumption activity), 저축행위(savings activity), 생산행위(production activity), 정치적 행위(political activity), 그리고 사회적 행위(social activity)의 5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1991년에서 1995년까지의 영국 사회의 사회적 배제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표 4> BLP의 사회적 배제 지표

차원	배제	지표
소비행위	저소득	전체 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저축행위	저재산(low wealth)	비자가(非自家) 소유-거주자, 직업연금이나 노령연금 제도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2,000 이하의 저축을 가진 사람
생산행위	생산행위의 결여	취업, 자영업, 가사종사자, 연금수령자, 전업학생이 아닌 사람
정치적 행위	정치적인 비참여	1992년 선거에 선거권 행사를 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정치조직(정당 포함)에 회원이 아닌 사람
사회적 행위	사회적 고립	지원받을 수 있는 주위 사람이 없는 사람.

자료: BLP(1999), Table 1.

이러한 지표를 기준으로 영국 가구 패널조사(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BHPS)의 데이터를 가지고 1991년에서 1995년까지 5년간 영국 가구의 사회적 배제 현상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배제 지표 중 저소득(전체 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1995년 기준 23.0%)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사회적 고립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1995년 기준 9.5%)이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표 5> 각 사회적 배제 지표별 기구비율(%)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저소득	22.8	23.4	23.4	23.4	23.0
저재산	18.8	17.9	17.2	17.9	17.1
생산활동 결여	11.1	12.4	12.3	11.9	11.2
정치적 비참여	13.2	15.5	14.2	13.4	12.4
사회적 고립	12.3	12.1	10.4	10.2	9.5

자료: BLP(1999), Table 2

또한 브로드쇼 외(J. Bradshaw and others, 2000)는 자신들이 개발한 측정지표를 사용하여 영국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된 인구의 규모를 추정한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브라드쇼 외(Bradshaw and others)의 사회적 배제의 분류 및 측정지표

분류	세부분류	측정지표	영국의 사회적 배제자 비율
적절한 수입으로부터의 배제	수입 미달	중위소득의 60% 이하	19%
	사회적인 필수품 결여	사회적 인정되는 필수품 중 2-3개의 품목을 경제적인 이유로 가지고 있지 못함	26%
	주관적 빈곤	설문조사	20%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실직상태 (퇴직, 학생 등 제외)	실업률	11%
공공 서비스로부터의 배제	공공재 향유	경제적인 이유로 전기, 수도, 가스, 전화 등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함	5%
		교통수단, 물품구매, 금융 서비스를 받지 못함.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배제	비참여	2-3개의 활동을 하지 못함	20%
	소외	일상적으로 가족과 친구를 만나지 못함	12%
	지원	가사 지원을 받지 못함	23%
	이탈(disengagement) 1	모든 행위에 참여하지 않음	10%
	이탈(disengagement) 2	선거를 제외한 모든 행위에 참여하지 않음	28%
	사회적 활동을 하지 못함(confinement) 1	여건 상 사회활동을 할 수 없음	29%
	사회적 활동을 하지 못함(confinement) 2	일몰 후 두려움 때문에 홀로 산책을 하지 않음	30%

자료: 브라드쇼 외(Bradshaw and others, 2000), Appendix, 1, 2, 3.

<표 7> 유럽연합의 사회적 배제 지표

구분	영역	지표(Indicators)	측정(Measurement)
1차적 지표 (Primary Indicators)	소득	1. 빈곤율	중위소득 60% 이하의 비율
		2. 소득분포	1분위소득과 5분위소득의 배율: 소득배율
		3. 빈곤지속성	지난 3년간 최소한 2년 이상 빈곤위험집단에 속해 있었던 가구의 비율
		4. 상대적 빈곤 격차	전체 소득분포상 중위소득 60%의 소득(빈곤선) 대비 빈곤층 중위소득의 비율
	지역적 결속	5. NUTS 2* 수준의 고용률	고용률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실직	6. 장기실직	경제활동 인구 중 12개월 이상 장기실직자의 비율
		7. 무직 가구원 수	전체 인구 중 일자리 없는 가구의 가구원 비율
	교육	8. 조기 교육기회 상실	18세-24세 중 ISCED** level 2 혹은 그 이하의 교육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
	수명	9. 평균 기대 수명	평균 기대 수명
	건강	10. 소득수준별 자각 건강 상태	WHO 기준으로 자신의 건강이 나쁘거나(bad) 매우 나쁘다고(very bad)라고 응답한 16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제1소득 분위(bottom quintile group)에 해당하는 사람 대비 제5소득 분위(top quintile group)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
2차적 지표 (Secondary Indicators)	빈곤	1. 빈곤 산포(dispersion)	중위소득 60% 이하의 산포(dispersion)
		2. 특정 시점 빈곤율 변화	3년 전(t-3) 빈곤선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가치분 소득을 가진 t 년도 소득자의 비율
		3. 소득이전 이전(before social cash transfer)의 빈곤율	현금급여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자의 비율
		5. 지속빈곤율	지난 3년간 최소한 2년 이상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소득자의 비율
	소득 분배	4. 지니 계수	로렌츠 곡선을 이용한 소득불평등도 산출
		실직	6. 장기 실직자 비율
	7. 극 장기(very long) 실직자 비율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24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실직자의 비율
	교육	8. 저학력 비율	연령집단별(25-34, 35-44, 45-54, 55-64)로 ISCED level 2 혹은 그 이하의 교육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

* NUTS (Nomenclature of Territorial Units for Statistics): 1970년대 말 유럽통계사무소(Eurostat)는 유럽연합의 지역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전 유럽을 땅 크기와 인구를 기준으로 3 수준의 지리적 단위(uniform territorial units)로 세분하였다. 2003년 현재 유럽연합은 72 NUTS 1 level, 213 NUTS 2 level 그리고, 1091 NUTS 3 level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개는

http://europa.eu.int/comm/eurostat/ramon/nuts/statistical_regions_en.html

참조.

**ISCED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Education): 1970년대 초반 UNESCO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일관성 있는 교육통계를 수집하고 생산하기 위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ISCED이다. ISCED는 level 0에서 level 6까지 모두 7단계가 있는데, level 2는 교육기간이 약 9년 정도 되는 낮은 기초 교육의 수준(lower secondary or second stage of basic education)을 말한다.

http://www.uis.unesco.org/TEMPLATE/pdf/isced/ISCED_A.pdf

참조.

자료: Bardone and Stanton (2003) Annex.

한편, 2000년 12월 니이스 유럽 이사회(The Nice European Council)⁹⁾에 모인 유럽연합 회원국의 정상들은, 2000년 3월 리스본 유럽 정상회의(The Lisbon European Summit)에서 이루어진 유럽 지역 내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극복방식에 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를 실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2000년도 두 번에 걸친 유럽 정상회담의 결정에 따라서,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¹⁰⁾는 각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회적 배제 지표를 개발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2001년 2월 유럽 사회적 보호위원회(Social Protection Committee)의 주관 하에 사회적 지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집단(technical group)이 구성되어 지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각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빈곤 및 사회적 배제의 지표(common indicators of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18개를 구성하게 되었다(<표 7> 참조).

5. 사회적 배제 수준의 국가간 비교

이번 장에서는 위의 제4장에서 살펴본 사회적 배제의 지표 중에서 대표적인 지표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프랑스, 영국 그리고 스웨덴의 사회적 지표의 수준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에 관하여 로빈슨과 오펜하임(1998: 4-5)은 사회적 배제의 영역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는 지표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대중들에게 쉽게 이해되고 대중들이 관심을 갖는 지표로서, 둘째, 계량화하기 쉽고, 셋째, 국제적 관습(international convention)에 맞아야 하며, 넷째 역동적인(dynamic) 차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섯째, 지역차원에서 실제로 운영될 수 있는 지표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지표로서 본 연구에서는 ① 빈곤율, ② 소득배율, ③ 지니계수, ④ 실업률, ⑤ 조기 교육기회 상실율, ⑥ 영아 사망률(infant mortality) 등 6가지 지표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배제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이며 중심적인 영역은 물론 소득수준인데, 여기에서는 개인 또는 개별가구 소득수준의 절대적인 차원의 지표(빈곤율)¹¹⁾와 상대적인 차원의 지표(소득 배율과 지니계수)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둘째, 장기 실업률 지표는 단순히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소

9)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는 로마조약(The Rome Treaty 1951)에 의한 유럽연합의 법률적 공식 기구가 아니라, 국가간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상호이익의 조정과 타협을 위하여 1975년 더블린에서 발족된 기구이다. 이후 1986년 단일유럽의정서(The Single European Act)를 통해 법적 기구로 인정되고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The Maastricht Treaty)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 공식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특히 유럽연합 기본 조약의 개정과 공동체의 확대 등과 같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의제들이 모두 유럽 이사회에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1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와 더불어 유럽연합의 3권을 형성하는 유럽연합의 최고 집행기구로서, 개별국가로서는 행정부에 해당된다.

11) 역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빈곤율보다는 빈곤지속성이 보다 정확할 것이나, 국가간 비교가능한 자료의 미비, 특히 유럽연합에 뒤늦게 가입한 스웨덴의 자료가 결측되어 있기 때문에, 빈곤율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한 시점에서의 빈곤율이 아니라 1997년 이후의 6개년도의 빈곤율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외를 넘어서서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고립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회적 배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선정하였다.¹²⁾ 셋째, 교육영역에 해당하는 ‘조기 교육기회 상실율’은 위의 <표 7> 유럽연합의 사회적 배제 지표에 적시되어 있는 지표로서 18세-24세 중 기초교육수준(ISCED level 2)¹³⁾ 혹은 그 이하의 교육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말한다. 넷째, 영아사망률 지표는 1차 보건의료 수준과 임산부의 영양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보건지표이기 때문에(Stewart, 2002: 30-31), 사회적 배제 지표로 선정하였다.

<표 8> 사회적 배제 지표에 대한 설명

영역	지 표	설 명	자 료
소득	빈곤율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60% 이하	Eurostat 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User's Database Version(이하 Eurostat ECHP UDV), Dec. '02.
	소득배율	5분위 가구 소득/1분위 가구 소득	Eurostat ECHP UVD, Dec. '02.
	지니계수	로렌츠 곡선을 이용한 소득불평등도	Eurostat ECHP UVD, Nov. '03.
실업	장기 실업률	경제활동 인구 중 12개월 이상의 장기 실직자 비율	Eurostat Labour Force Survey
교육	조기교육 기회 상실율	18세-24세 중 기초교육 수준 이수에 그친 사람의 비율	Eurostat Labour Force Survey
건강	영아사망률	1세 이하 영아의 사망률(1000명당)	Eurostat NewCronos Database

위의 <표 8>에 나타난 6가지의 사회적 배제 지표를 기준으로 프랑스, 영국, 스웨덴, 그리고 EU-15(유럽연합 회원국 15개국의 평균치)¹⁴⁾의 사회적 배제의 상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9>와 같다. 우선 세 나라의 사회적 배제의 상황을 살펴(1994)의 세 가지 패러다임에 비추어 살펴보자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사회민주주의적 전통을 가진 스웨덴이 소득, 소득배율, 장기실업률, 조기교육기회 상실, 영아사망률 등 모든 지표에서 사회적 배제상태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유주의적 전

12) 이 논문에서는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 속에서 폐쇄(closure)나 고립·소외(isolation)를 나타내는 직접적인 지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연구대상이 되는 프랑스, 영국, 스웨덴을 대상으로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장기실직률’ 지표를 통해서 사회적 고립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제2장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개념규정에 따르면, 자기 배제(voluntary self-exclusion)에 해당하는 실망실업자도 매우 중요한 사회적 배제 지표가 될 수 있으나, 이 역시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자료를 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13) 위의 <표 7> 유럽연합의 사회적 배제 지표 주(註) 참조

14) 이 논문에서 EU-15(유럽연합 회원국 15개국의 평균치)를 사용한 이유는 현재 유럽연합에서는 집행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를 중심으로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공동체 차원에서의 집합적인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유럽연합이 연방주의적 이상을 가지고 사회적 배제의 극복전략(사회적 조화정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 15개국 회원국의 평균치는 개별국가의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의 기준점(또는 수렴점)으로서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다.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문진영(2003: 322-326)을 참조하시오.

통을 가진 영국은 장기실직률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사회적 배제 현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한편 공화주의적 전통을 강하게 갖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는 EU-15에 근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하자면, 실버(1994)가 분석한 바와 같이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영국은 각기 기반하고 있는 사회의 철학적 기초가 다르고, 이에 따라서 사회적 배제의 형태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프랑스, 영국, 스웨덴의 사회적 배제 상황

영역	국가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빈곤율 (%)	프랑스			15	15	15	16	15	
	영국			18	19	19	19	17	
	스웨덴			9	10	9	11	10	
	EU-15			16	15	15	15	15	
소득배율 (배)	프랑스			4.4	4.2	4.4	4.2	4.0	
	영국			4.7	5.2	5.2	5.2	4.9	
	스웨덴			3.1	3.4	3.2	3.5	3.4	
	EU-15			4.7	4.6	4.6	4.4	4.4	
지니계수 (%)	프랑스	29		29		29		27	
	영국	32		30		32		31	
	스웨덴	22		22		23		24	
	EU-15	31		29		29		28	
장기 실업률 (%)	프랑스	4.5	4.6	4.8	4.6	4.2	3.6	3.0	2.8
	영국	3.6	3.1	2.5	1.9	1.7	1.5	1.3	1.1
	스웨덴	2.3	2.8	3.1	2.6	1.9	1.4	1.0	1.0
	EU-15	4.9	4.9	4.9	4.4	4.0	3.5	3.1	3.0
조기교육기회 상실율 (%)	프랑스					14.7	13.3	13.5	13.4
	영국					19.7	18.3	17.6	17.7
	스웨덴					6.9	7.7	10.5	10.4
	EU-15					20.5	19.4	18.9	18.5
영아 사망률 (1,000명당 비율)	프랑스	4.9	4.8	4.7	4.6	4.3	4.6		
	영국	6.2	6.1	5.9	5.7	5.8	5.6		
	스웨덴	4.1	4.0	3.6	3.5	3.4	3.4		
	EU-15	5.6	5.5	5.2	5.1	5.0	4.7		

하지만 일견으로 알 수 있는 사회적 배제 지표의 국가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각 사회적 지표를 대상으로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를 한 결과, 6개의 사회적 배제 지표 모두에서 국가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 < .000$)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아래의 <표 10> 참조).

<표 10> 사회적 배제 지표의 일원 분산분석 결과

사회적 배제 지표	구분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빈곤율	집단 간	190.95	3	63.65	134.00	.000
	집단 내	7.60	16	.48		
	합계	198.55	19			
소득배율	집단 간	7.84	3	2.61	82.98	.000
	집단 내	.50	16	3.15E-02		
	합계	8.35	19			
지니계수	집단 간	159.69	3	53.23	48.208	.000
	집단 내	13.25	12	1.10		
	합계	172.94	15			
장기실직률	집단 간	32.05	3	10.68	15.647	.000
	집단 내	19.16	28	.68		
	합계	51.16	31			
조기교육 기회상실	집단 간	322.52	3	107.51	84.88	.000
	집단 내	20.26	16	1.27		
	합계	342.78	19			
영아사망률	집단 간	15.72	3	5.24	69.61	.000
	집단 내	1.51	20	7.52E-02		
	합계	17.22	23			

이러한 일원 분산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프랑스, 영국, 스웨덴, 그리고 EU-15의 사회적 지표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국가간 짝짓기(pairwise)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튜키(Tukey)의 다중비교기법인 ‘정직한 유의차(Honestly Significant Difference: 이하 HSD)’기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1>과 같은데, 이를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다.

<정직한 유의차(HSD) 산출식>

$$T_s = \frac{M_i - M_j}{\sqrt{\frac{MSE}{N_h}}}$$

M_i - M_j = i번째 평균과 j번째 평균 사이의 차이
 MSE = 평균제곱오차 (Mean Square Error)
 N_h = i집단과 j집단의 샘플크기의 조화평균(harmonic mean)

<표 11> 사회적 지표의 국가별 짝짓기

사회적 배제지표	국 가	집단군		
		1	2	3
빈곤율 ^a	스웨덴	9.80		
	프랑스		15.20	
	유럽평균		15.20	
	영국			18.40
소득배율 ^a	스웨덴	3.32		
	프랑스		4.24	
	유럽평균		4.54	
	영국			5.04
지니계수 ^a	스웨덴	22.75		
	프랑스		28.50	
	유럽평균		29.25	29.25
	영국			31.25
장기실직률 ^a	스웨덴	2.01		
	영국	2.09		
	프랑스		4.01	
	유럽평균		4.09	
조기교육 기회상실 ^a	스웨덴	8.90		
	프랑스		13.64	
	영국			18.0
	유럽평균			19.1
영아사망률 ^b	스웨덴	3.67		
	프랑스		4.65	
	유럽평균			5.18 ^b
	영국			5.88 ^b

^a 유의수준 = .05

^b 영아사망률의 경우, 국가간 짝짓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첫째, 사회민주주의 전통이 강한 스웨덴의 경우에는 모든 사회적 배제 지표에서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EU-15의 사회적 배제 지표와 비교하여 양호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이 분석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다른 이념적 기반을 가진 나라보다 사회적 배제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따라서 보다 인간적인(more humane) 사회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일반의 인식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역사적으로 강한 자유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영국은 빈곤율, 소득배율, 지니 계수 등 소득 관련 사회적 배제 지표에서 EU-15에 미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조기교육 기회 상실과 영아 사망률 등 다른 사회적 배제 지표에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자유주의의 기반 위에서 시장에 보다 의존적인 사회시스템을 갖춘 결과가 이렇게 열위의 사회적 배제 지표로 나타났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실업을 지표만 유일하게 스웨덴과 짝을 이룰 정도로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영국 특유의 노동시장정책의 전통과 특히 블레이어 정부 취임 초기부터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는 신고용협정(New Deal) 정책과 같은 조건부과형 급여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실업자들이 현금급여를 수령받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노동시장에 편입된 결과, 장기실직자들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공화주의적 전통을 가진 프랑스는 교육영역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유럽평균에 근사한 짝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국 프랑스의 사회적 배제의 수준이 바로 현재 유럽 사회적 배제의 수준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앞으로의 후속 연구와 정책개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결국 현실적인 지표의 차이로 측정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개념과 관점을 정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배제의 비교국가 연구에서 국가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는 이러한 연구를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 혹은 다른 지역의 국가에게도 확대할 수 있는 논리적 기반을 제공한다. 즉 이러한 방식의 국가간 비교연구 작업을 통해서, 한 국가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현재 위치와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그 국가가 개선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속도를 설정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는 보편주의적 접근보다는 일국 특수주의적(nation-specific)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논문의 분석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적 배제의 현실적 차이는 그 사회에 뿌리박고 있는 (철학적) 구조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유럽연합 전체 차원에서의 보편적인 거시적 프로그램보다는 회원국의 차원, 더 나아가서는 지방의 차원에서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시적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문진영. 2003. “지구화시대 초국가적 권위체가 복지국가체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3: 311-336.
- 박능후. 1999.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근로연계복지정책의 효과성”. 1999년도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 학술발표회 자료집: 8-28.
- 박병현·최선미. 2001. “사회적 배제 및 하층계급의 개념고찰과 이들 개념들의 한국 빈곤정책에의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45: 185-219.
- 심창학. 2001. “사회적 배제 개념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44: 178-208.
- 심창학. 2003. “프랑스의 한부모 정책 및 가족복지정책”.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 정책 및 서비스』.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64-89.
- Abrahamson, P. 2003. “Researching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Europ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3(3): 281-285.
- Atkinson, R. and S. Davoudi, 2000. “The Concept of Social Exclusion in the European Union: Context, Development and Possibilities”.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38(3): 427-448.
- Atkinson, T. 1998. “Social Exclusion, Poverty and Unemployment”. pp. 1-24. in *Exclusion*,

- Employment and Opportunity*, edited by T. Atkinson and J. Hills. CASE paper no. 4. London: Centre for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 Bardone, L. and D. Stanton. 2003. *The Experience of Developing Indicators in the Social Protection Committee's Indicators Sub Group*. Paper Presented to 23rd CEIES seminar: Social Protection Statistics. Lisbon.
- Barry, B. 1998. *Social Exclusion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CASE paper no. 12 London: Centre for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 Begg, I. and J. Berghman. 2002. "Introduction: EU social (exclusion) policy revisited?"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2(3): 179-194.
- Berghman, J., 1995. "Social Exclusion in Europe : Policy Context and Analytical Framework". pp. 10-28. in *Beyond the Threshold :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edited by G. Room. Bristol: Policy Press.
- Bradshaw, J. and others.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Britain*. Paper Presented for the 26th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in Income and Wealth. Poland.
- Burchardt, T., J. Le Grand, and D. Piachaud(BLP), 1999. "Social Exclusion in Britain 1991-1995".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33(3): 227-244.
- _____. 2002. "Introduction" in *Understanding Social Exclusion*, edited by J. Hills, J. Le Grand and D. Piachau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12.
- Byrne, D. 1999. *Social Exclusion*.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Castles, R. 1990. *Extreme Cases of Marginalisation: from Vulnerability to Deaffiliation*. Paper presented to a conference "Poverty, Marginalisation and Social Exclusion in the Europe of the 1990s". organised under the auspices of the European Commission, Alghero, Sardinia.
- Dennis, I. and A. Guio. 2003(a).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the EU after Laeken, Part 1". *Statistics in Focus*. Theme 3 - 8/2003.
- _____. 2003(b).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the EU after Laeken, Part 2". *Statistics in Focus*. Theme 3 - 9/2003.
- Evans, M. 1998. *Out for the Count: the Incomes of the Non-household Population and the Effect of their Exclusion from National Income Profiles*. Welfare State Programme Discussion paper WSP/III, London: LSE.
- Ferrera, M., 1996. "The 'Southern Model' of Welfare in Social Europ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6: 17-37.
- Hague, E., C. Thomas and S. Williams, 2001. "Exclusive Visions? Representations of Family, Work and Gender in the Work of the British Social Exclusion Unit". *Gender, Place and Culture* 8(1): 73-82.
- Hughes, J. 1991. *The Social Charter and the Single European Market: Towards a Socially Responsible Community*. Nottingham: Spokesman.
- Jordan, B. 1997. *A Theory of Poverty and Exclusion*. Cambridge: Polity Press.
- Klemman, M. and D. Piachaud. 1993. "European Social Policy: Conceptions and Choices". *Journal of*

- European Social Policy* 3(1): 1-19.
- Kooten, G. 1999. "Social Exclusion and the Flexibility of Labour". pp. 47-66. in *Social Exclusion in Europe: Problems and Paradigms*, edited by P. Littlewood. Aldershot: Ashgate.
- Kuhn, T. 1970.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2nd ed. Enlarged.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Lenoir, René. 1974. *Les Exclus: Un Français sur Dix*. Paris: Editions du Seuil.
- Littlewood, P. and S. Herkommer, 1999. "Identifying Social Exclusion: Some Problems of Meaning". pp. 1-21. in *Social Exclusion in Europe: Problems and Paradigms*, edited by P. Littlewood. Aldershot: Ashgate.
- MaPherson, S. 1997. "Social Exclusion". *Journal of Social Policy* 26(4): 533-541
- Paugam, S. 1998. "Les Formes Contemporaines de la Pauvreté et de l'Exclusion". *Genèse* 31(juin). 138-159.
- Richardson, L. and J. Le Grand. "Outsider and Insider Expertise: The Response of Residents of Deprived Neighbourhoods to an Academic Definition of Social Exclusion".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36(5): 496-515.
- Robinson, P and C. Oppenheim. 1998. *Social Exclusion Indicators: A Submission to the Social Exclusion Unit*. London: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 Room, G. 1995.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the New European Agenda for Policy and Research". pp. 10-28. in *Beyond the Threshold :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edited by G. Room. Bristol: Policy Press.
- Room, G. 1995. "Conclusions". pp. 233-247. in *Beyond the Threshold :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edited by G. Room. Bristol: Policy Press.
- Sen, A. 2000. *Social Exclusion: Concept, Application, and Scrutiny*. Social Development Papers No. 1. Asian Development Bank.
- Silver, H. 1994.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Three Paradigm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3(5-6). 531-578.
- . 1995. "Reconceptualizing Social Disadvantage: Three Paradigms of Social Exclusion". in *Social Exclusion: Rhetoric, Reality, Responses*, edited by G. Rodgers, C. Gore and J. Figueiredo. Geneva: ILO.
- Social Exclusion Unit(SEU), 1997. *Social Exclusion Unit: Purpose, Work Priorities and Working Methods*. London: SEU.
- Sommerville, P. 2000. *Social Relations and Social Exclusion: Rethinking Political Economy*. London: Routledge.
- Stewart, K. 2002. *Measuring Well-Being and Exclusion in Europe's Regions*. CASEpaper 53. Centre for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 Townsend, P. 1979.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London: Penguin.
- Vlemminckx, K., and J. Berghman. 2001. "Social Exclusion and the Welfare State: an Overview of Conceptual Issues and Implications"pp. 27-46. in *Social Exclusion and European Policy*, edited by D. Mayes, J. Berghman, and R. Salais. Cheltenham: Edward Elgar.
- Vobura, G. 2000. "Actors in Processes of Inclusion and Exclusion: Towards a Dynamic Approach".

-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34(5): 601-613.
- Walker, R. 1995. "The dynamics of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pp. 102-128, in *Beyond the Threshold :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edited by G. Room. Bristol: Policy Press.
- Weinberg, A. and J. Ruano-Borbalan. 1993. "Comprendre l'Exclusion" *Sciences Humaines* 28: 12-15.
- Whelan, C., R. Layte, B. Maitre, and B. Nolan. 2002. "Income and Deprivation Approaches to the Measurement of Poverty in the European Union", pp. 184-201, in *Social Exclusion in European Welfare States*, edited by R. Muffels, P. Tsakloglou and D. Mayes. Cheltenham: Edward Elgar.
- EC Commission. 1992. *Towards a Europe of Solidarity: Intensifying the Fight Against Social Exclusion: Fostering Integration*. Brussel.
- EC Commission. 2002. *European Social Statistics: Income,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2nd Report*.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C.
- EC Commission. 2003. *Joint Report on Social Inclusion*. SEC(2003)1425. Brussel.
- Eurostat. 2003. *The Social Situation in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C.
- Eurostat. 2004. *European Social Statistics: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ceipts*.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C.
- Social Exclusion Unit. 2004. *Tackling Social Exclusion: Taking Stock and Looking to the Future: Emerging Findings*.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Wetherby: ODPM.
- Social Protection Committee, EC Commission. 2001. *Report on Indicators in the Field of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Brussel.
- http://europa.eu.int/comm/eurostat/ramon/nuts/statistical_regions_en.html(검색일:2004년 4월 15일).
- http://www.uis.unesco.org/TEMPLATE/pdf/isced/ISCED_A.pdf(검색일: 2004년 4월 15일).

A Comparative Study of Social Exclusions Amongst France, UK and Sweden

Moon, Jin-Young
(Sogang University)

Since the early nineties, the European welfare states have been undergoing a paradigm shift from 'poverty' to 'social exclusion' in that the disadvantaged have increased in many areas, despite continuing increases in general living standards due to the steady economic development in Europe. In relation to this, Silver (1994) traces the evolution of the term 'exclusion' over time, and distinguishes three paradigms within which social exclusion is embedded (solidarity, specialisation and monopoly).

In this regards, this paper purports to examine if differences of social exclusion indicators amongst three paradigm countries (notably, France, UK and Sweden)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is purpose it takes the steps of 'theoretical conceptualisation' → 'classification of nations' → 'indexation for measurement', each of which constitutes an independent chapter. It duly argues that social exclusion indicators of three countries are hierarchically different in line with the Silver's three paradigms of social exclusion.

Key words: Poverty, Social Exclusion, Silver's Three Paradigms.

[접수일 2004. 6. 13. 게재확정일 2004. 7. 22.]